

광주지방법원 2023. 2. 10 선고 2022가단5413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3. 1. 27.

판 결 선 고 2023. 2. 1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이체내역에 관하여 2018. 11. 14.에 증여받은 금원 중, 원고 채권액 금 30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증여행위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.

① 작성일 2010. 11. 22. / 차용금액 10,000,000원 / 이자 월 2부(매월 27일)

② 작성일 2014. 5. 27. / 차용금액 20,000,000원 / 이자 월 1부(매월 27일) 나. D은 광주지방법원 2021개회58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. 10. 1.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.

다.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D에 대하여 6,000만 원의 개인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.

라. D은 위 나항 기재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1. 12. 29.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,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다.

마. 원고는 2022. 9. 30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5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은 유일한 재산이던 ‘전남 영광군 E 외 6필지 F아파트 G호’를 2018. 11. 14.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중 105,000,000원을 피고(D의 배우자)에게 이체하여 증여하였으므로, 원고의 채권액 3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.

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행사를 하여야 하고,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D이 2021. 10. 1.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, 원고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,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사실, 이 사건 소는 2022. 9. 30. 제기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춘화